

# 제주지방검찰청

주소 : 제주시 이도2동 950-1  
전화번호 : (064)729-4123

690-751

2006/07/03

110-240

제주법원우체국

요금후납



7.6수령

받는사람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  
빌딩 신관 3층

참여연대

110-240

우 690-751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<b>제주지방검찰청</b> / 전화 729-4123 / 전송 729-4555			
수신자	참여연대	발신자 검사	정유미 (인)
제 목	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	2006. 6.30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		2006년형제 329호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피의자명	한문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6.29
처 분 결 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, 공소권없음		
피의자명	주식회사하스토스탬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6.29
처 분 결 과	기소유예		
피의자명	김성수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6.29
처 분 결 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, 구약식		
피의자명	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6.06.29
처 분 결 과	구약식		

### 안 내

-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
  - 가.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
  - 나. 10일 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
  -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
  -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729-41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